

(제11-7-2호)

회사분할 결정

※ 2023.11.17. 보고/공시한 내용의 변경 및 물적분할의 종료 보고/공시

1. 분할방법	물적분할
2. 분할목적	(1) 리츠사업부문을 독립법인으로 분리 경영하여 국내외 부동산 투자분야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2) 리츠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은 관련 법령과 사업모델, 업무내용이 집합투자업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독립법인으로 분리하여 운영하여 각 부문의 특성에 맞게 독립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여 대상 사업부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리츠사업에 관련한 전문성 확보와 성장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사업부문 운영을 위하여 독립적인 리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한다.
4. 분할비율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은 산정하지 않는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이하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식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함)(이하 "이전대상재산")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단,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에게 부과된 과징금 기타 행정처분(과태료, 벌금, 세금, 제재, 가산세, 가산금 등을 포함) 및 이와 관련된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

		또는 배분되지 않고 분할회사에 귀속된다. (2) 이전대상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은 분할회사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 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ii)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사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이하 "존속 사업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존속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동일함},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후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3)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23년 6월 30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본 분할계획서 첨부서류(분할재무상태표, 승계대상 재산목록, 승계대상 계약목록, 승계대상 근로관계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2023년 12월 31일(분할기일) 0시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은 본 분할계획서 첨부서류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에이디에프자산운용 주식회사 (ADF Asset Management Co., Ltd.)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29,758,576,772	부채총계	7,504,050,837
		자본총계	22,254,525,935	자본금	2,000,000,000
		2023.12.31. 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 연도매출액(원)	16,339,354,760			
	주요사업	일반사모집합투자업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에이디에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가칭) (ADF Investment Co., Ltd.)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5,707,206,219	부채총계	447,206,219
			자본총계	5,260,000,000	자본금	5,260,000,000
			2023.12.31. 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0			
	주요사업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해당사항 없음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종료일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종료일				
	신주배정조건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신주배정기준일					
신주권교부예정일						
9. 주주총회 예정일			2023.12.06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해당사항 없음			
		종료일				
11. 분할기일			2024.01.17			
12. 분할등기 예정일			2024.01.18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1.1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단순물적분할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관련공시	

<기재상의 주의>

- 주1) 「상법」 제530조의2,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에 관한 결정(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한다.
- 주2) “분할방법”은 “인적분할” 또는 “물적분할” 등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 주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는 분할이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및 효과 등을 기재한다.
- 주4) “분할비율”은 존속회사주식 1주당 교부할 신설회사주식수를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한다.
- 주5) “회사명”란은 법인의 한글명을 기재 후 ()에 영문명을 추가 기재한다.
- 주6) “감자비율”은 감자전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감자주식수의 비율을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한다.
- 주7) “신주배정조건” 및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는 신주가 배정되는 조건과 분할되는 회사 주주의 주식수에 비례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근거 및 사유를 기재한다.
- 주8) “풋옵션등 계약체결여부” 및 “계약내용”에는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콜옵션·풋백옵션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방, 계약일, 계약내용(대상, 행사가격, 행사기간 등) 등을 기재한다.
- 주9) “증권신고서 제출면제의 경우 면제사유”를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 주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상기 기재사항과 관련한 사항이거나 상기 기재사항 이외의 사항 중 해당공시와 관련한 이행요건, 부대요건, 제약요건, 옵션사항, 기타 참고사항 등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자세하게 기재한다.